

##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정책1-1>

##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

허진 |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재외국민이주과장

### 1. 개관

재외동포에 대한 내외적 관심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지 및 대안모색들에 관한 논의들이 최근처럼 활발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속칭 재외동포법)’의 제정과 2003년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한동안 재외동포의 법적 근거마련에 몰입하였던 일련의 시기들을 둘러싼 논쟁들은 그동안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었던 재외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 분야에서 급격히 부상함은 물론,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따른 재외동포사회의 포섭 및 확장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된 시대적 변혁을 특징 지워왔습니다.

한편 1997년 재외동포 지원역할을 전담키 위해 외교부 산하에 설립된 재외동포재단도 제한된 인력과 예산범위 내에서 폭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요구를 여하히 수용할 것인가를 새삼 재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변화의 추세 속에서 작년 11월 7년 동안 잠들고 있던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재개하였고, 연 2회에 걸친 외교부 차관 주재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도 활성화시켜, 급변하는 재외동포업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메카니즘을 확립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 2. 재외동포정책 기본 목표와 주요 방향

재외동포를 갖고 있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재외동포정책은 현지 사회의 안정적 정착과 민족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보존, 제고하기 위한 모국-동포사회간 유대관계강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년 11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3개항의 기본 목표와 6개항(각 기본목표당 2개 주요 방향)의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신장과 역량강화입니다.(주요 방향: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조노력 지원/ 거주국내에서의 법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지원)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사회 내에서의 법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 및 거주국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동포들 스스로의 자조노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특히 거주국에서 차별받지 않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권익을 보호, 신장하는 제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측면지원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입니다.

둘째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입니다.(주요 방향: **모국과의 유대증진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문화교류 등 각종 사업지원**) 정부는 우리 동포들이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또 하나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회복할 수 있도록 언어, 전통,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 활동을 지원코자 하며, 그러한 지원이 안정적 틀 속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셋째,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입니다.(주요 방향: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모국과 거주국간 우호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 이를 위해 정부는 특히 재외동포 경제단체의 결속강화와 재외동포 기업인들의 경제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설립하고, 현재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계획 추진과정에서도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적극 포섭할 계획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개최되는 한인회장대회나 세계한상대회는 동포재단은 물론 정부 전체차원에서도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모국과 동포사회간의 유대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그러한 인적 교류의 활성화가 모국과 거주국간의 전반적인 관계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재외동포는 두 나라를 연계하는 가장 효과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3. 재외동포정책현안 주요 범주

#### 가. 재외동포법 개정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한 제 일의 공약은 “재외동포법”의 개정 등 재외동포의 국내법적 지위 개선이었습니다.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를 모두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그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에서의 활동에 많은 불편을 겪어 온 재외동포들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여 이를 내국민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 동포들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외동포법은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주한 동포로 제한함으로써 주로 재미동포와 재일동포에게만 법 혜택이 부여되었고, 재중동포 및 재러시아·CIS 동포는 제외됨에 따라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결국, 2001년 헌법재판소는 동포간 평등권 위반으로 동 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정부는 2003년 12월 동 법 및 하위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해외 이

주 시점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간 차별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 및 러시아·CIS 동포들도 동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국회는 2004년 2월 재외동포법(제2조) 자체를 개정하여 재외동포 범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에 이주한 자를 포함한다” 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외국국적 동포들이 단순노무 종사 등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불법체류 목적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F-4)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다발국가로 등록되어 있는 중국 및 러시아·CIS 지역 동포들의 경우 재외동포체류비자 발급에 있어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모국 왕래 및 취업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아울러 경주하고 있습니다.

#### 나. 최근 국적법 개정 동향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된 국적법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국적법 개정안은 원정출산, 부모 해외유학 등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된 국적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거나 유학도중 또는 상사주재원이나 외교관으로 생활하다 출산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생활근거지가 한국에 있는 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사실상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생당시 또는 출생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된 국적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기 국적법을 개정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해외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병역 의무 면제의 혜택을 받아온 이들에게 정당한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서 전체 재외동포에 대해 국가의 의무를 강요하자는 취지가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적이탈자의 경우, 우리 국민인 부 또는 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F-4)이 부여되지 않으며, 외국인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들이 향유하는 기왕의 혜택들을 누릴 수 없으며, 경제적 활동, 취업, 의료보험 등 많은 분야에서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다. 중국동포의 국적업무 처리지침 개정

취업 등 경제적 이유를 목적으로 한 중국동포들의 국내 유입 증가로 인해 불법체류자

가 급증하였으며,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들이 그 해결방안으로 집단으로 국적취득을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계기에 그동안 중국동포에게만 따로 적용되던 국적업무 처리 지침에 대한 차별시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동포의 국적취득을 제한해 왔던,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 지침”을 폐지하고 2004.4.1일 “외국국적동포의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개정된 지침으로 인해 국적취득 신청대상에 신청자의 기혼자녀가 추가되었고, 불법체류자의 경우라도 국내호적이 있는 동포 1세 등 일부는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적회복 신청자 본인이 한국국민이었던 사실증명의 요건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 지침의 부칙 개정을 통해 ‘1992.8.24 한.중 수교 이전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계속 체류중인 중국동포’에 대해서도 국적 취득 또는 귀화 신청을 허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장기간의 국내체류로 중국내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한국인으로 동화되었음을 감안, 인도적 차원의 고려를 하자는 취지로서 일부 중국동포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할 사항은, 우리 정부의 재중동포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최대 애로 사항은 중국정부와의 관계입니다.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정부의 재중동포 정책 수립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종종 불편한 심기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중국동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코자 노력하면서도 중국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이 확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배려는 결국 재중동포 스스로의 입지를 온전히 하고 거주국에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 라. 고용허가제 시행

정부는 2002년 말부터 중국, 러시아·CIS 등의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우대정책의 일환으로 취업관리제를 시행하여 왔으며, 2004년 8월 취업관리제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고용특례로 흡수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고용허가제 실시로 인해 취업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취업허용업종에 서비스업이외 건설업과 자동차정비업이 추가되었고, 허용 연령도 30세에서 2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대폭적인 고용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재외동포의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5월부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통한 취업이외에 본인 스스로 취업한 경우에도 고용허가를 인정함으로써, 그간 취업관리

제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문제점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해 있던 많은 중국 동포들이 합법적인 취업 활동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 동포들을 단순한 외국인력관리 차원이 아니라 미래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통해 현 취업관리제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 동포들의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출입국 문제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마. 이중국적 문제

현행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되는 경우 각국의 국적관계법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이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케 됩니다.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된 자는 이중국적이 된 때부터 2년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18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을 필할 때까지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고, 병역을 마친 이후 비로소 국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번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일시 체류 중 출생한 자는 병역을 필할 때까지 국적 상실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중국적 문제는 그간 재미동포들로부터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으며, 2001년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이중국적 인정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청한 바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을 위해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비롯해서 모든 관계부처가 이중국적허용 검토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관계부처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이중국적 허용에 따라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와 같은 국민의 의무를 회피할 경우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가 2개 국가로부터 부과되어 외교적 마찰 발생 가능성은 물론,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나타내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치질서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예기치 못한 안보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사실 정부는 재외동포들의 이중국적 허용 요구가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권익보호와 국내체류 등에 있어서의 편의 도모인 점을 감안하여 99.12.3부터 재외동포법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동 법으로 인해 사실상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경제활동에서의 제약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인구가동이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다중 정체성 문제의 증대가 불가피한 최근의 국제사회 추세를 감안할 때, 이중국적 문제를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 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

우리나라 현행 관계법에 의하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보유한 20세 이상 국민 중 국내거주자가 아닌 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 성숙화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실현시켜 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국외부재자 투표가 시행되는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조하에 재외공관에서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에 의해 차기 대통령선거부터는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 체류자들은 국외 부재자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대통령선거시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어 잠정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 사안은 조만간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 영주권자나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장기 체류자의 경우, 병역납세 등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민에게 참정권만을 부여함으로써 내국인과의 형평성 시비를 초래하고, 거주국에서의 정착촉진보다는 과도한 모국지향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현재로서는 선거권 부여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 사. 동포교육 및 동포단체 지원

현재 동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외교부와 동포재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재외동포사회의 단체구성, 연락망 구축 등 동포사회의 조직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비는 외교부가 관장하고, 프로젝트성 사업비는 동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외교부가 관장하는 재외동포단체보조금은 재외공관을 통해 수시 지원되고 있으나, 워낙 광범한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수의 동포단체들을 빠짐없이 지원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특히, 그간 지원예산규모의 추이를 보면 본국 경제사정의 부침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는 등 안정적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만, 재외동포들의 절실한 수요와 숙원사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포재단 역시 동포사회의 다양한 추진행사들에 대한 지원을 감당할 의욕에 충만해 있기는 하나, 동포들의 실제적 지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 증액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은 설립 초기 때부터 시달려 온 만성적인 예산과 인력부족을 극복하고, 동포문제에 관한 전방위적인 사업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역량강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우리 동포 2세-3세 및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모국어해 및 모국어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을 14개국에 각각 25개교, 35개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100개국 2060여개 교의 한글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한국학교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우리 동포자녀들과 모국을 연계하는 연결고리가 이완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교육예산을 0.1%에서 0.2% 이상 수준으로 재외동포교육에 투여할 방침이며 기존 초·중등교육에서 유치원교육까지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재외동포교육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전체 학생중 5.3%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동포자녀들에 대한 무상학비 지원을 결정, 추진하는 등 단순한 지원금의 증액보다 정부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배려해 나가는 세심함을 도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동포들께서는 이러한 동포교육이야말로 한인사회의 지속발전은 물론 모국과 동포간의 유대강화를 기약하는 가장 기초가 됨을 유념하시어 정부와 함께 동포교육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4. 향후 과제

오늘날의 세계는 모든 재화와 용역뿐만 아니라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 형성, 변화하는 새로운 글로벌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화 현상이 우리가 궁극에 도달할 ‘주관적 가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차피 전 세계가 같이 움직여 나가면서 직면해야 할 ‘객관적 조건’ 임에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국가간 국경이 느슨해지고, 기존의 국가체제(state system)와 함께 사적 실체(private entity)들의 세계적 운동이 극명하게 교차하는 현재의 추세는 당분간 이 세기를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영향력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화와 일견 상충될 것으로 보이는 민족간 연계는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열린 민족주의’ 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거 우리가 회구하던, 또는 타성으로 인정해 왔던 혈통에 의거한 우리만의 삶의 공동체를 구성하던 시기는 이제 떠났습니다.

세계화의 진행과 신흥 민족주의가 동시에 발생하는 오늘의 시대에서 종래의 틀에 따른 우리 민족만의 생존과 중흥이라는 데에는 타민족, 타 국가와의 갈등을 조성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상정될 수 있는 우리 재외동포들의 과제는 우선 거주국내에서 우수한 한국인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되, 그들에게도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입



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거주국에서의 활약과 기여가 곧바로 모국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공고하게 할 것임은 물론, 여러분 스스로의 입지를 강화시키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거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과 모국과의 유대강화는 결코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며, 그 둘이 충족될 때, 비로소 모국과 재외동포간의 호혜적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새삼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대전제를 염두에 두고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면서 동포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동포 4대 밀집지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CIS는 이민형성의 역사적 배경이나 과정, 현재 동포들의 거주국내 법적 지위 및 거주환경 등이 너무나도 상이한 결과, 정부는 그러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곧 개별 동포사회의 실질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동포들의 실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정책개발·시행시 동포사회내의 최근 변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포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현지동화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포 1세대의 수적인 감소와 2~3 세대의 등장으로 인해 종래 모국지향성이 강했으나 지금은 다중적 귀속감으로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 일본지역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부는 거주국에 동화되어가고 있는 이민 2~3세대를 어떠한 방식으로 모국과 연계시킬 것인가를 심각히 고려하면서, 동포사회의 구성변화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동포사회의 육성과 지원책을 마련토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외동포를 피수혜자로만 보아 오던 관점에서 탈피하여 동포들의 역량을 모국에서 활용하고 자발적으로 기여토록 하는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네트워킹 사업이 그 좋은 예로써 이제는 동포들이 모국 정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건설적 비판과 제안은 언제든지 검허하게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러한 정책의 성패 여부는 결국 정책수요자의 만족도에 달려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외동포들과의 충분한 열린 대화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